

2026년 제2회 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 제2회 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6월 18일

구리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5,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분야 및 인원

- 채용개요

임 용 분 야 (근무부서)	임 용 직 급	인 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일반행정 (의회사무과)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1년* (주35시간)	○ 일반행정(의정지원) 공통업무 수행 ○ 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 ○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자격요건

- 1)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2) 연령 : 18세 이상
- 3) 지역 및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4)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 바. 삭제 <2022. 1. 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임용예정 분야(직급)	자격요건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일반행정' 또는 '사무운영'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공공기관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상세히 명시(불분명한 경우 미인정)

- 1)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일반임기제), 10년(시간선택제임기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함.
- 2) 경력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
 - (공무원경력) ○급 또는 ○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 ○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고등학교 졸업 후 ○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2)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주당 근로시간, 관련분야 경력(담당업무 명확히 기재),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 3) 시간제근무 경력일 경우,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 후 인정
 - <예시> 4년간 주20시간 근무 :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함)
- 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 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1일 7시간(09:00~17:00), 주 5일 근무(주 35시간)

※ 근무환경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적용하되,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주35시간 기준
라급/8급(상당)	62,096천원	44,296천원	38,759천원

- (수당)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름

- (복리후생)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연금, 건강 ·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6. 18. (목) ~6. 30. (화)	2026. 7. 1. (수) ~7. 3. (금)	2026. 7. 8. (수) 전 후 (홈페이지 게시)	2026. 7. 15. (수) ~ 7. 16. (목) 中 (홈페이지 게시)	2026. 7. 22. (수) 전 후 (홈페이지 게시)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확인

○ 제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서면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시험(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단, 평가 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대상)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상, 중, 하)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7. 1.(수) ~ 7. 3.(금) 18:00까지 [3일간]

○ 응시수수료 : (라급) 구리시 수입인지 5,000원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서류 안내(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5.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가족관계 증명서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퀵서비스/택배 접수 불가)

방문 접수

- ◇ 접수처 :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회운영팀(1층)
- ◇ 찾아오는길 : (대중교통) 구리시청, 구리아트홀 정류장
(자가용) 구리시청 내 주차장 ※ 최초 1시간 무료
-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함
- ◇ ‘구리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수입증지)납부 후 제출

등기우편 접수

- ◇ 주소 : (우)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의회 인사담당자
- ◇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 현금 및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 ※ 우편봉투 겉면에 “2026년 제2회 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 ※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사실을 반드시 담당자(☎031-550-2517)에게 전화로 고지하여야 함.

○ 제출서류

연번	서류항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다급) 구리시 수입인지 7,000원, (라급) 구리시 수입인지 5,000원 - (방문접수) 구리시청 1층 민원실에서 수수료납부 후 응시원서에 인증기날인 - (우편접수) '우체국 통상환증서' 구입 후 동봉 * <u>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16:30) 유의, 정부 수입인지 등 불가</u>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u>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는 경력은 기재 금지</u>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1부 - 서식의 작성요령 참고, A4 용지 2매 내외 작성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서식의 작성요령 참고, A4 용지 2매 내외 작성	제5호 서식
6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해당자만 작성, 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제6호 서식
7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해당 시) 사본 1부 >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재직 사실만을 확인 가능한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발급확인자 성명과 연락처, 서명(인)이 있어야 함 -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받아 제출하거나 <서식 제7호>경력증명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 비정규직, 비상근 경력인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인사담당자 자필확인이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경력 미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시 :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2년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	제7호 서식

연번	서류항목	비고
8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본 각 1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내용 확인 必) 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또는 1577-1000번에서 발급 나.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
9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교 이하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제출	-
10	주민등록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1부	-
11	그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해당 시)	-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1부	제8호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제9호 서식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제10호 서식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번역된 한글 번역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상기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양면인쇄 금지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담당자 등의 위조·변조를 포함)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해드립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재공고)**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구리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cc.or.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 공고합니다.(재공고시 기존 응시원서 제출자는 응시번호 그대로 반영)
- 그 밖에 채용관련 문의 :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회운영팀(031-550-2517)